

# 축산법중 개정법률안

농림부

본고는 지난 8월 29일 농림부에서 공포한 축산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한 것이다.

지난 8월 농림부는 축산업의 규모화되어 밀집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의 위생 및 관리강화를 위한 축산물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하며,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확대하는 등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로는 ①부화업·종축업 등 축산업의 방역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종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대상에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업을 포함하여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신설). ②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 등을 위반한 때 시장·군수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20조의3 신설) ③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함(제21조 삭제). ④도축장에서 처리되는 축산물로 한정되어 있는 축산물등급판정대상을 계란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안제2조제6호 및 제7호, 안 제28조제1항, 동조 제3항 내지 제6항, 안 제30조제3항, 안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41조제3항, 안 제44조제4호 및 제5호, 안 제45조제4호). ⑤부화업·종축업 등이 신고대상에서 등록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등록의무 위반시 벌칙을 부과토록 변경(안 제44조제2호) ⑥축산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승계자가 휴업·영업재개·승계한 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등록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제4호 및 제6호) 등이다.

## 축산법중개정법률안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계란집하업”이라 함은 닭의 알을 수집하여 선별·포장한 후 판매하는 업을 말

한다.

**제19조제1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정액등처리업자 또는 수정소개설자”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정액등처리업자, 정액유통업자, 수정소개설자”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정액등처리업에 대한 우수업체 인증) ① 농림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의 우수업체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우수업체의 인증기준, 인증심의 절차 등 세부내용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축산업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부화업
2. 계란집하업
3.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축산업의 시설에 관한 기준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후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등록된 사항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영업의 승계) ①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축산업의 등록취소 등) 시장·군수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자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등을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의4(축산업 등록자의 준수사항)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중 “부화업자등”을 “축산업등록자”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시장·군수는 부화업자, 종축업자, 기타 가축의 사육을 업으로 하는 자”를 “시장·군수 및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받은 축산물에 한하여 거래하게”를 “시행”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종전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12조”를 “제17조”로, “제39조”를 “제43조”로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의 대상축산물중 농림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에 한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에 한하여 거래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거래지역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중 “제28조”를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 “제28조제5항”을 “제28조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상 이익금

제41조제3항중 “도축장”을 각각 “도축장 및 제란집하장”으로 한다.

제4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취소

제44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조 제5호(종전 제4호)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 제6호(종전 제5호)중 “제28조제5항”을 “제28조제6항”으로 한다.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

제45조제4호중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을 “제2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 신고를 한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지역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지역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중 “제28조제5항”을 “제28조제6항”으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